

문래동 모아미래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

I 공급개요 및 일정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5가 13, 13-1, 13-3번지
- 공급규모 : 총 222세대 중 분양 199세대 (지하2층, 지상16~18층, 4개동)

공급내역

주택형 (주거전용 면적기준)	공급세대수		임주 예정시기
	계	기관추천	
59.90	1	-	'18. 01.
84.75A	130	13	
84.98B	8	-	
84.81C	60	6	
계	199	19	

일정 계획

구 분	일 자	참고사항
• 입주자모집공고	2015. 09. 17(목)	일간신문 및 문래동 모아미래도 홈페이지 http://ml.mraedo.com/
• 건물주택 개관	2015. 09. 18(금)	서울시 양천구 목동 919-8번지
• 접수일자	2015. 09. 22(화)	건분주택 방문접수 (인터넷 청약접수 불가)
• 당첨자발표	2015. 09. 22(화)	당사 건물주택(1644-7447)에 게재
• 동호수발표	2015. 10. 2(금)	당사 건물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

* 위 일정은 일부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II

특별공급자격

- 입주자모집공고일 (2015.09.17.목) 현재 '무주택세대구성원'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자를 대상으로 함. 단,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현행대로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함.

■ '무주택세대구성원'의 정의

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1인

※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

- (1)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,
 - (2) (세대주 및 세대원 중)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,
- (1) + (2)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

※ 세대원 기준

세대주(신청자)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[세대주(신청자)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(신청자)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]

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1.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'무주택세대구성원'이 아닌 자.
2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과거 3차례 우선공급, 노부모부양 우선공급)을 받은 자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)

■ 행정사항

-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건물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, 확인결과 위의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·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. (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 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)
-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특히 1번 (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) 사항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가능하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또한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 · 호배정) 및 계약불가]

III

신청서 구비서류

- 아래의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15.09.17)이후 발급분에 한함
-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
- 본인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
-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서 (각 1통)

해당서류	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특별공급신청서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일에 신청장소(건본주택)에 비치
주민등록표등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
가족관계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) 제출,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) 제출
인감도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인 신청서 서명가능

■ 제3자 대리신청서 추가 구비서류

구비서류	비 고
위임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[양식은 (건본주택)에 비치]
신청자 인감증명서	
신청자 인감도장	
대리신청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) 또는 여권

IV

유의사항

-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(2015.09.22.(화)예정)에 분양사무실 (서울시 양천구 목동 919-8번지 주택전시관, 문래동 모아미래도)에서 신청접수처 없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.
-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·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(금융결제원)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.(미신청 · 미계약 동 · 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)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특별공급(다자녀,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)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통장호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.
- 공급금액, 전매제한기간, 해당철제한기간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5.09.17(목)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
-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, 팜플렛 및 사이트 건본주택 (<http://ml.miraeco.com/>)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주자모집공고일 (2015.09.17) 현재 ‘무주택세대주’ 및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시행일 2015년 2월 27일(금)을 기준으로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으로 자격 완화되나,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‘무주택 세대주’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.